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주 차 장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를 마칩

1. 의결주문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기계식주차장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수시검사 제도를 도입하고, 기계식주차장치에 대한 운행중지명령의 근거를 마련 하며,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원에 대한 안전교육의무 등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차장 법」이 개정(법률 제19686호, 2023. 8. 16. 공포, 2024. 8. 17. 시행)됨에 따 라, 수시검사의 요청 및 연기 절차 등을 정하고, 기계식주차장치에 대한 운행중지명령의 절차와 해당 명령에 따른 주차장 확보 의무의 이행기간 등을 정하며, 보수업자의 보수원 안전교육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 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 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지구 내의 주차전 용건축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기계식주차장 사고에 따른 피해 보상 강화를 위하여 보수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배상보험의 요건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주차환경개선지구 내에 건축되는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규제 완화

(안 제1조의2제1항)

주차장 외의 부분이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이 주차전용건축물로 인정하려면 종전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던 것을, 앞으로는 주차환경개선지구 내에 위치한 건축물의 경우 60퍼센트 이상만 주차장으로 사용해도 주차전용건축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함.

나. 기계식주차장치의 수시검사 요청 및 연기(안 제12조의3)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자 등은 주요구동부의 부품을 변경하는 등의 경우 수시검사를 요청하도록 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검사를 받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검사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함.

다. 배상보험 의무 가입 대상 확대 및 배상보험 요건 강화(안 제12조의7)

- 1) 종전에는 보수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배상보험의 배상한도액 기준이 사고당 1억원, 피해자 1인당 1억원이었으나, 앞으로는 물적 손해의 경우 사고당 1억원, 인적 손해의 경우 피해자가 사망 또는 후유장애 발생 시 1억5천만원, 부상 시 3천만원 등으로 그 기준을 강화함.
- 2)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를 관리하는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자 등도 기계식주차장의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보험에 가입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20대 이상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치의 관리자 등은 배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

라. 기계식주차장 운행중지 시 기계식주차장 관리자 등의 주차장 확보 의무(안 제12조의17 신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운행중지명령에 따라 운행이 중지된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자 등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통보하는 기간 내에 인근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고, 이를 확보하지 않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근 주차장을 직접 확보하고 그 확보에 드는 비용을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자 등에게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마. 보수업자의 보수원 안전교육 미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및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 6)

1) 보수업자가 보수원 안전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그 기간에 따라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신설된 과태료 부과사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2) 기계식주차장에서의 사고 발생 시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위반기간에 관계 없이 정액으로 부과하던 과태료를 위반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과태료 부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그 부과기준을 정비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3. 13. ~ 4. 22., 2024. 4. 23. ~ 6. 3.,
2024. 7. 00. ~ 7.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 단서 중 “70퍼센트”를 “70퍼센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 내에 위치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60퍼센트)”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국토교통부장관(법 제19조의12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에 안전도인증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지정인증기관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12조의3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제3호 중 “정기검사”를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제5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연기받은 자”를 “제6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연기한 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법 제19조의9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한 자 또는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자(이하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라 한다)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주요구동부의 부품변경, 운반기 및 철골을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주차장을 사용하기 전에 같은 조 제2항제3호가목에 따라 수시검사를 요청해야 한다.

⑥ 제5항 각 호에 따른 사유로 정기검사 또는 법 제19조의9제2항제3호 나목에 따른 수시검사를 연기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기한 전에 연기신청을 해야 한다.

1. 정기검사의 경우: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
2. 법 제19조의9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수시검사의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수시검사 실시 통보일

⑧ 제6항에 따라 수시검사를 연기한 자는 해당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의4의 제목 “(검사대행자의 지정 및 취소)”를 “(지정인증기관 등의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19조의12에 따라 검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전문검사기관”을 “법 제19조의12제1항에 따른 지정인증기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법 제19조의12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② 법 제19조의12제1항에 따라 지정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지정요건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12조의7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의7(기계식주차장의 사고 등에 대한 배상보험) ① 법 제19조의14 제1항에 따라 보수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보수업자”라 한다) 및 법 제19조의16제2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법 제19조의9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한 자 또는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19조의16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보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험의 종류는 기계식주차장 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기계식주차장 사고배상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일 것

2. 보험금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가. 물적 손해의 경우: 사고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

나. 인적 손해의 경우: 피해자 1명당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일 것

1) 사망한 경우: 1억5천만원. 다만, 실제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 부상당한 경우: 3천만원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으로 인해 신체의 장애 (이하 이 조에서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 1억5천만원

4) 하나의 사건으로 1)부터 3)까지의 손해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음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가) 부상자가 치료 중 그 부상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1)의 금액
+ 2)의 금액

나) 부상자에게 그 부상으로 인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2)의
금액 + 3)의 금액

다) 후유장애가 생긴 후 후유장애를 유발한 부상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1)의 금액 + 3)의 금액 - 3)의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

3. 보험은 보수업을 운영하는 기간 또는 기계식주차장치를 관리하는 기간 동안 유지될 것

② 법 제19조의1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란 수용할 수 있는 자동차대수가 20대 이상(하나의 주차장에 2개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기계식주차장치가 수용할 수 있는 자동차대수의 총합이 20대 이상)인 기계식주차장치를 말한다.

③ 보수업자 및 법 제19조의16제2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하 이 조에서 “보수업자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전에 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1. 보수업자: 보수업을 시작하여 최초로 보수계약을 체결하는 날
2.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 법 제19조의9제2항제1호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 또는 기계식주차장을 양수하여 관리를 시작하는 날

④ 보수업자등은 보험계약을 체결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보험계약 체결 또는 변경일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체결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9조의21제1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에 보험계약의 체결을 증명하는 정보를 입력하는 것으로 그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⑤ 법 제19조의16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보수업자가 법 제19조의19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보수업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2. 법 제19조의16제2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 법 제19조의24제1항에 따른 운행중지명령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기계식주차장을 관리할 수 없게 된 경우
3. 보험회사가 해당 배상보험을 판매하고 있지 않은 경우
4. 보험회사가 「상법」 제650조제1항·제2항, 제651조, 제652조제1항 또는 제654조에 따라 종전에 맺은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

제12조의12의 제목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19조의22제5항”을 “법 제19조의22제6항”으로, “사고조사판정위원회”를 “사고조사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라목 중 “법 제19조의12”를 “법 제19조의12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19조의22제8항에 따라 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제12조의14제3호 중 “법 제19조의22제5항”을 “법 제19조의22제6항”으로 한다.

제12조의17부터 제12조의19까지를 각각 제12조의18부터 제12조의20까지로 하고, 제12조의1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17(기계식주차장치의 운행중지명령)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의24제5항에 따라 주차장을 확보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인근(법 제19조제4항 후단에 따른 시설물 부지 인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주차장을 확보할 것을 해당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 인근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인근 주차장을 직접 확보하고 그 비용을 법 제19조의24제5항에 따라 해당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의18(중전의 제12조의1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9조의24제1항”을 “법 제19조의25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의20(중전의 제12조의1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9조의24제1항”을 “법 제19조의25제1항”으로 한다.

제18조 중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제

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 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고 신축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시검사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기계식주차장치의 주요구동부의 부품, 운반기 및 철골을 변경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5조(안전도인증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안전도인증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1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법 제19조의12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에게 안전도인증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지정인증기관을 말한다)에게 안전도인증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6조(보험 가입에 관한 특례 등) ① 이 영 시행 당시 기계식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으로서 법 제19조의16제2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자는 제12조의7제5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② 제12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2조의7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대해서는 그 보장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의2]

지정인증기관의 지정요건(제12조의4제2항 관련)

구분	지정요건
1. 법인·단체 형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일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일 것 나. 기계식주차장치 안전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일 것
2. 기술인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명 이상을 상시인력으로 보유할 것 가. 기계·전기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나. 기계·전기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전기 분야 또는 이와 유사한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라.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심사와 관련된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마.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다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 1) 위반행위자가 현실적으로 과태료 금액을 부담할 수 있는지 여부
-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마.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회	2회	3회 이상

가. 법 제17조제2항(법 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경우	법 제30조제2항제1호	30	50	100
나. 법 제19조의9제3항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법 제29조제2항제7호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30조제2항제2호	30	50	100
다. 법 제19조의10제2항(법 제19조의23제5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검사확인증이나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제3항제1호	10	30	50
라. 법 제19조의14제3항을 위반하여 보수업자가 보수원이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제2항제2호의2	30	50	100
마. 법 제19조의16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초과 30일 이하인 경우 3)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60일 이하인 경우 4)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법 제30조제1항제1호	50 80 100 200	80 100 200 300	100 200 300 400
바. 법 제19조의17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제2항제3호	30	50	100
사. 법 제19조의20제2항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을 기계식주차장치	법 제30조제2항제4호	30	50	100

관리인으로 선임 또는 변경하거나 보수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아. 법 제1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선임 또는 변경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1) 통보를 하지 않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2) 통보를 하지 않은 기간이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인 경우 3) 통보를 하지 않은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법 제30조제3항제2호			
			10	
			30	
			50	
자. 법 제19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치 안전관리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제2항제4호의2	30	50	100
차. 법 제19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안내문을 붙이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제3항제3호	10	30	50
카. 법 제19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자체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제2항제4호의4	30	50	100
타. 법 제19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자체점검 결과를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에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1) 입력을 하지 않은 경우 가) 입력을 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미만인 경우 나) 입력을 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상인 경우 2)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법 제30조제2항제4호의5			
		10	20	30
		20	30	50
		30	50	100
파. 법 제19조의2제9항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 운영을 중지하지 않은 경우 또는 운영의 중지를 방해한 경우	법 제30조제2항제4호의6	30	50	100
하. 법 제1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30조제1항제2호			

통보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 보한 경우				
1)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가) 통보를 하지 않은 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		10	30	50
나) 통보를 하지 않은 기간이 1개월 초과 3개월 이하인 경우		30	50	100
다) 통보를 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인 경우		50	100	200
라) 통보를 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경우		100	200	400
2)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100	200	400
거. 법 제19조의22제2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사고의 현장 또는 중대한 사고와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시키 거나 변경 또는 훼손한 경우	법 제30조제1항제3호	100	200	400
너. 법 제19조의23제1항 후단에 따른 정기적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법 제29조제2항제11호의3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 외한다)	법 제30조제2항제5호	30	50	100
더. 법 제19조의24제3항을 위반하여 운행중지 표지를 붙이지 않거나 잘 볼 수 없는 곳에 붙이거나 훼손 되게 관리한 경우	법 제30조제2항제5호의2	30	50	100
러.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법 제30조제2항제6호	30	50	100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의2(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 면적비율) 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표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 이하 “단독주택”이라 한다),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창고시설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u>70퍼센트</u> 이상인 것을 말한다.	제1조의2(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 면적비율) ① ----- ----- ----- ----- ----- ----- ----- -----. ----- ----- ----- ----- ----- ----- ----- ----- ----- ----- ----- ----- -- <u>70퍼센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 내에 위치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60퍼센트)</u> ----.

④ 법 제19조의9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2. (생략)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정기검사를 받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⑤ 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유로 정기검사를 연기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연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자(이하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라 한다)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주요구동부의 부품변경, 운반기 및 철골을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주차장을 사용하기 전에 같은 조 제2항제3호가목에 따라 수시검사를 요청해야 한다.

⑤ -----

-----.

1. 2. (현행과 같음)

3. ----- 정기
검사 또는 수시검사-----

⑥ 제5항 각 호에 따른 사유로 정기검사 또는 법 제19조의9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수시검사를 연기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기한 전에 연기신청을 해야 한다.

1. 정기검사의 경우: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
료일

⑥ 제5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연기받은 자는 해당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그때부터 2개월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정기검사가 끝날 때까지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신 설>

제12조의4(검사대행자의 지정 및 취소) ① 법 제19조의12에 따라 검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 설>

2. 법 제19조의9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수시검사의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수시검사 실시 통보일

⑦ 제6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연기한 자-----

-----.

-----.

⑧ 제6항에 따라 수시검사를 연기한 자는 해당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의4(지정인증기관 등의 지정) ① 법 제19조의12제1항에

따른 지정인증기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

-----.

② 법 제19조의12제1항에 따라 지정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지정요건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지정요건은 별표 2와 같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별표 2의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 검사업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경우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2조의7(보험) ① 법 제19조의14 제1항에 따라 보수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보수업자”라 한다)가 법 제19조의16제1항에 따라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은 보험금액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은 별표 1의2와 같다.

③ 법 제19조의12제2항-----

--.

<삭 제>

<삭 제>

제12조의7(기계식주차장의 사고 등에 대한 배상보험) ① 법 제19조의14제1항에 따라 보수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보수업자”라 한다) 및 법 제19조의16제2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관리자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1. 사고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

2. 피해자 1인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

② 보수업자는 보수업을 시작하여 최초로 보수계약을 체결하는 날 이전에 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보수업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보험계약 체결일 부터 30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체결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등(법 제19조의9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한 자 또는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19조의16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보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험의 종류는 기계식주차장 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기계식주차장 사고배상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일 것

2. 보험금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가. 물적 손해의 경우: 사고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

나. 인적 손해의 경우: 피해자 1명당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일 것

1) 사망한 경우: 1억5천만원. 다만, 실제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 부상당한 경우: 3천만원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

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

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으로 인해 신체의

장애(이하 이 조에서 “후

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 1억5천만원

4) 하나의 사건으로 1)부터

3)까지의 손해 중 둘 이

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음 구분에 따른 계산식

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가) 부상자가 치료 중 그

부상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1)의 금액 + 2)

의 금액

나) 부상자에게 그 부상

으로 인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2)의 금액

+ 3)의 금액

다) 후유장애가 생긴 후

후유장애를 유발한 부

상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1)의 금액 + 3)

의 금액 - 3)의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

3. 보험은 보수업을 운영하는
기간 또는 기계식주차장치를
관리하는 기간 동안 유지될
것

② 법 제19조의16제2항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란 수
용할 수 있는 자동차대수가 20
대 이상(하나의 주차장에 2개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기계식
주차장치가 수용할 수 있는 자
동차대수의 총합이 20대 이상)
인 기계식주차장치를 말한다.

③ 보수업자 및 법 제19조의16
제2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관
리자등(이하 이 조에서 “보수업
자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른 기한 전에 제1
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해야 한
다.

1. 보수업자: 보수업을 시작하
여 최초로 보수계약을 체결하

는 날

2.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 법 제 19조의9제2항제1호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 또는 기계식주차장을 양수하여 관리를 시작하는 날

④ 보수업자등은 보험계약을 체결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보험계약 체결 또는 변경일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체결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9조의21제1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에 보험계약의 체결을 증명하는 정보를 입력하는 것으로 그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⑤ 법 제19조의16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보수업자가 법 제19조의19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보수업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2. 법 제19조의16제2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 법

제12조의12(사고조사판정위원회 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9조 의22제5항에 따른 <u>사고조사판 정위원회</u>(이하 “위원회”라 한 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 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생 략)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 른 지명위원은 1명으로 한다. 1. (생 략) 2. 위촉위원: 기계식주차장에 관	<u>제19조의24제1항에 따른 운행 중지명령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기계식주차장을 관리 할 수 없게 된 경우</u> 3. <u>보험회사가 해당 배상보험을 판매하고 있지 않은 경우</u> 4. <u>보험회사가 「상법」 제650 조제1항·제2항, 제651조, 제 652조제1항 또는 제654조에 따라 종전에 맺은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u> 제12조의12(사고조사위원회의 구 성 및 운영) ① 법 제19조의22 제6항----- <u>사고조사위원 회</u>----- -----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1. (현행과 같음) 2. -----
---	--

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 다. (생략) 라.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법 제19조의12에 따라 지정된 전문검사기관에서 10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마. (생략)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⑤ ~ ⑧ (생략) 제12조의14(위원회의 업무)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생략) 3. 법 제19조의22제5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조사한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원인 등에 대한 판정 제12조의17(부기등기의 절차 등)	----- -----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 법 제19조의12제2항----- ----- ----- 마. (현행과 같음) ④ ----- ----- ----- ----- 다만, 법 제19조의22제8항에 따라 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12조의14(위원회의 업무) ----- ----- 1. 2. (현행과 같음) 3. 법 제19조의22제6항----- ----- ----- 제12조의18(부기등기의 절차 등)
--	--

①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경우와 법 제19조의4제1항제2호 및 이 영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설치된 주차장을 인근 부지로 위치를 변경한 경우에 시설물의 소유자는 법 제19조의2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기등기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

1. 2. (생략)

② ③ (생략)

<신설>

① -----

----- 법 제19조의25제1항-----

-----.

1. 2. (현행과 같음)

②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의17(기계식주차장치의 운행중지명령)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의24제5항에 따라 주차장을 확보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인근(법 제19조제4항 후단에 따른 시설물 부지 인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주차장을 확보할 것을 해당 기계식주차장 관리자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기계식

	<u>주차장관리자등이 인근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인근 주차장을 직접 확보하고 그 비용을 법 제19조의24제5항에 따라 해당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납부하게 할 수 있다.</u>
<u>제12조의18</u> (생략)	<u>제12조의19</u> (현행 제12조의18과 같음)
<u>제12조의19</u>(부기등기의 말소 신청) ① <u>법 제19조의24제1항</u>에 따라 부기등기한 부설주차장으로서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용도변경이 인정된 경우에 시설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기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1. 2. (생략) ② (생략) <u>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u>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u>제12조의20</u>(부기등기의 말소 신청) ① <u>법 제19조의25제1항</u>----- ----- ----- ----- ----- ----- ----- ---. 1.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u>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	
연 락 처	(044) 201 - 3814